

## 평생학습계좌제 안내

### □ 개념

-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·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 설계를 지원하고,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민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를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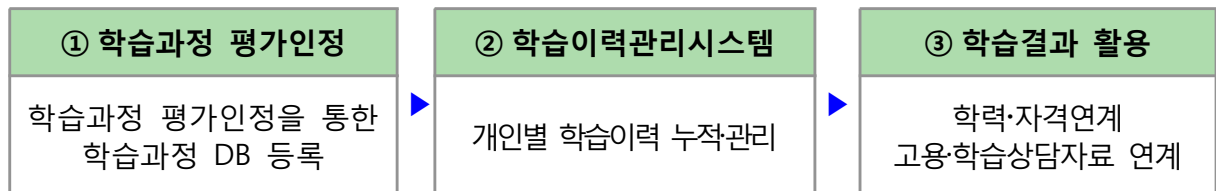
### □ 대상 : 전 국민

### □ 법적 근거

「평생교육법」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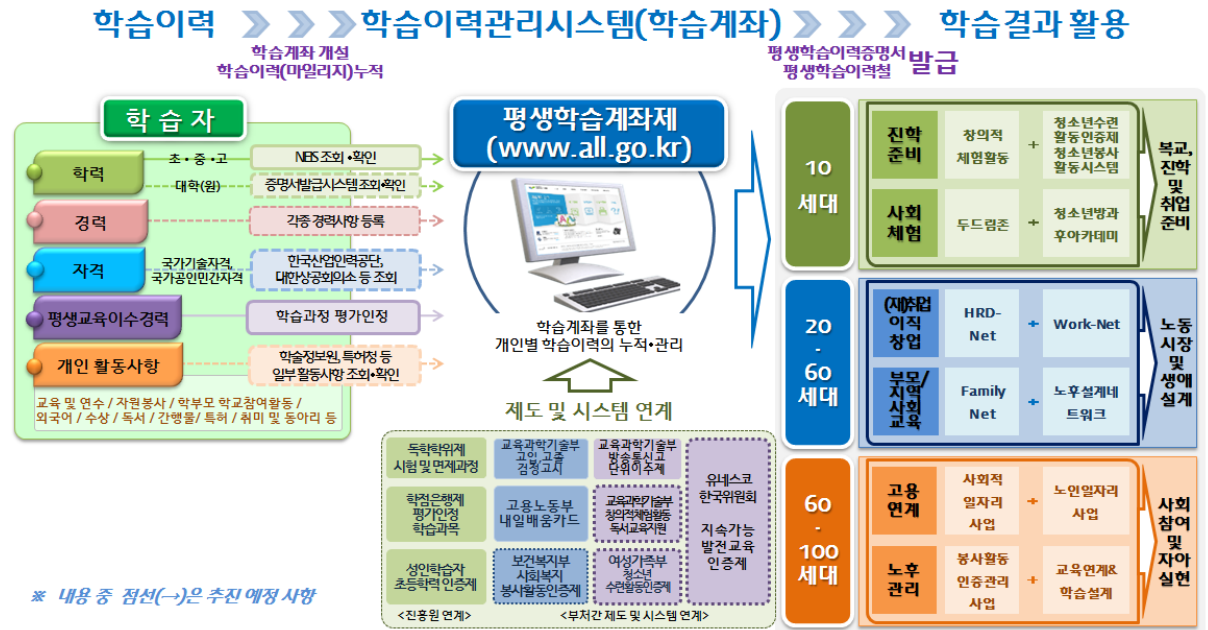
**평생교육법 제23조 (학습계좌)**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·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(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)를 도입·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구성 요소



- **(학습과정 평가인정)**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평가하여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절차
- **(학습이력관리시스템)** 학습자가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만든 학습계좌로 인적사항, 학력, 자격증, 경력, 평생교육 이수 실적, 특기사항(교육 및 연수, 외국어, 자원봉사, 수상, 간행물, 취미 및 동아리 등)을 수록(www.all.go.kr)
- **(학습결과 활용)** 자신의 학습이력을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또는 평생학습이력철로 발급받아 학습설계, 학력 및 학위, 자격 취득과 연계하거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, 자원봉사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

## □ 운영 체제도



## ※ 학업 중단자 및 성인 학습자의 초·중 학력 인정과 연계

- 성인문해교육 : 평가인정 학습과정(기초문해교육영역) 이수 시 초등·중학교 학력 인정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)
- 검정고시 : 평가인정 학습과정(검정고시 연계과정) 이수 시 검정고시 응시과목 면제 (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15조,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)

## □ 추진 체제

